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0호 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0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0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09년 3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09년 6월 30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tmc.com](http://www.kitmc.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 IV.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0호	13386

**2. 모집예정기간 :**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2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tmc.com)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 투자대상자산 및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 ■ 투자대상자산 등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남은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매도
  8.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0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신탁계약서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신탁계약서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 제 8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주 1) 상기 투자대상은 투자대상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개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으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비교지수: (MMI CALL ×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기본운용전략

-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잔존만기 범위내의 우량자산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 3. 수익구조 : 특이사항 없습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원본손실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b>시장위험</b>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b>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유동성위험</b>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채무불이행 위험</b>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재투자위험</b>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MMF는 장부가로 기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괴리수준이 클 경우(1,000분의 5)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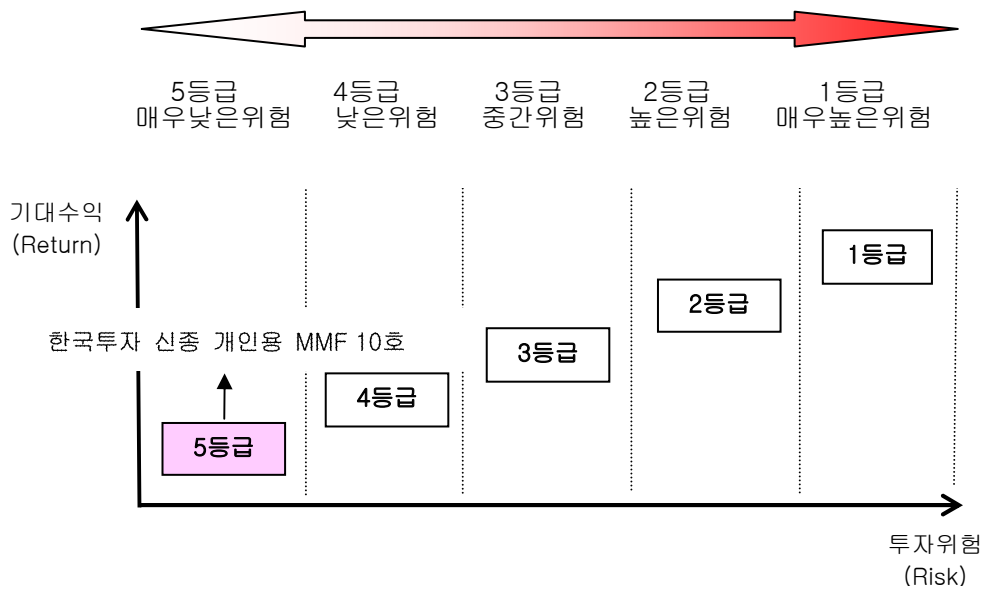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li> <li>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li> <li>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li> <li>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li> <li>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li> <li>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li> </ul> </li> <li>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li> <li>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li> </ol>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5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5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09.03.23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박현봉	1969	차장	94 개	72,233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대 무역학과</li> <li>- 1999.05~2000.06 : 한국투자증권 채권운용부</li> <li>- 2000.06~2002.02: 한국투자신탁운용 트레이딩센터</li> <li>- 2002.02~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li> </ul>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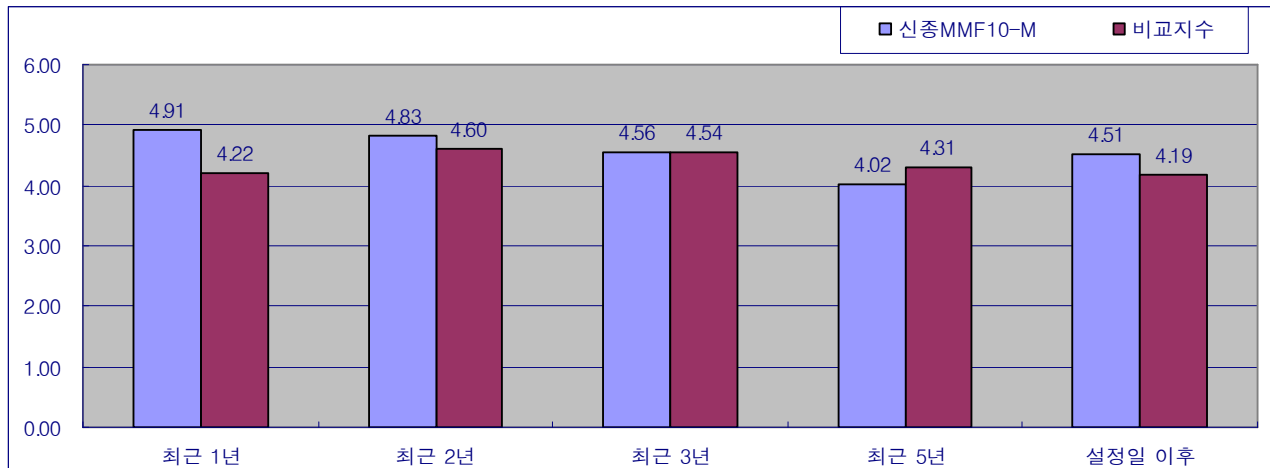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3.24 ~09.03.23	07.03.24 ~09.03.23	06.03.24 ~09.03.23	04.03.24 ~09.03.23	99.07.31 ~09.03.23
투자신탁(전체)	4.91	4.83	4.56	4.02	4.51
비교지수	4.22	4.60	4.54	4.31	4.19

(주 1) 비교지수: (1 \* [MML\_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8.03.24 ~09.03.23	07.03.24 ~08.03.23	06.03.24 ~07.03.23	05.03.24 ~06.03.23	04.03.24 ~05.03.23
투자신탁(전체)	4.91	4.74	4.03	3.12	3.33
비교지수	4.22	4.97	4.43	3.50	4.43

(주 1) 비교지수: (1 \* [MML\_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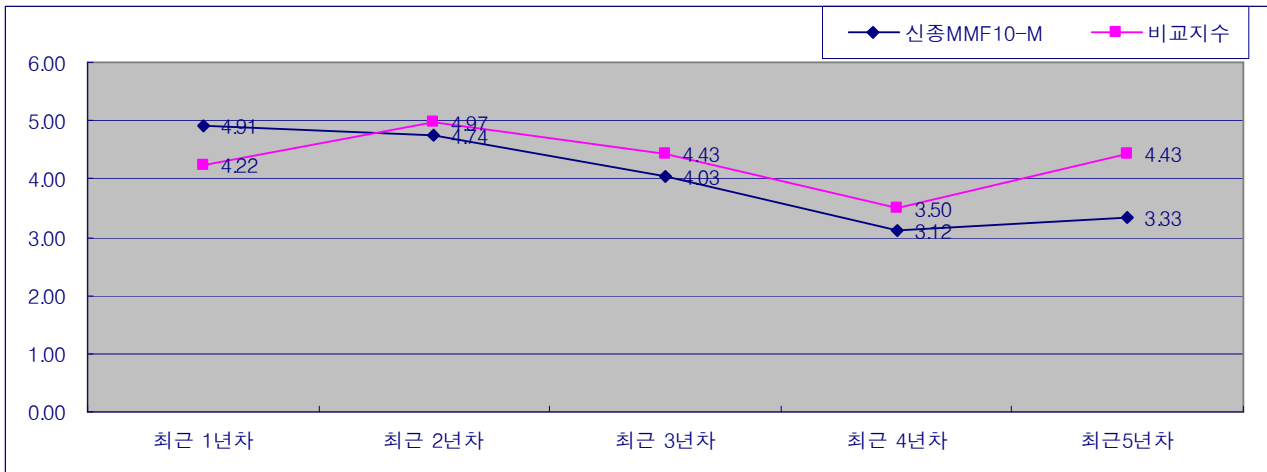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상기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47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100	
신탁업자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80	
기타 비용	0.015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4102	-
증권 거래비용	0.0026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07.07.31~2008.07.30]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07.07.31~2008.07.30]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132	230	51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액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 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

**나. 매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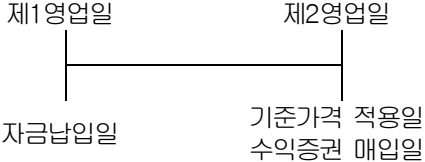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실지명의의 개인에게만 판매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가격의 적용 예외**

- (1)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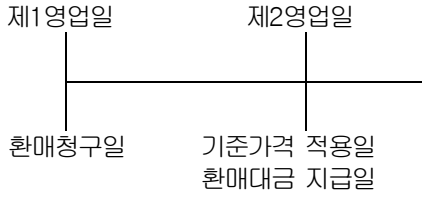
**다. 환매 절차**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1)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 2009.01.30 )	( 2008.07.30 )	( 2007.07.30 )
운용자산	2,277,844,369	5,242,813,797	9,356,141,782
증권	1,135,613,338	4,788,862,883	8,671,050,07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42,231,031	453,950,914	685,091,70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492,547	43,189,523	82,957,049
<b>자산총계</b>	<b>2,284,336,916</b>	<b>5,286,003,320</b>	<b>9,439,098,831</b>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087,977	11,591,677	19,142,571
<b>부채총계</b>	<b>3,087,977</b>	<b>11,591,677</b>	<b>19,142,571</b>
원본	2,219,967,523	5,024,413,845	9,033,432,847
수익조정금	-40,351,138	-72,666,703	-656,427,625
이익잉여금	101,632,554	322,664,501	1,042,951,038
<b>자본총계</b>	<b>2,281,248,939</b>	<b>5,274,411,643</b>	<b>9,419,956,260</b>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 2008.07.31 - 2009.01.30 )	( 2007.07.31 - 2008.07.30 )	( 2006.07.31 - 2007.07.30 )
운용수익	112,074,188	360,576,389	1,184,648,238
이자수익	112,095,097	356,757,254	1,181,114,85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0,909	3,819,135	3,533,37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0,013,886	35,616,208	134,596,615
관련회사 보수	10,013,886	35,616,208	134,596,61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27,748	2,295,680	7,100,585
당기순이익	101,632,554	322,664,501	1,042,951,03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